

1.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3. 7.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각각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

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감사실장은 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제19조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행정주사·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한다.

제20조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2,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33,212
일반직 계	33,2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우정사업본부장)	1
고위공무원단	1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5
서기관	10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 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 통신사무관	611
행정주사·공업주사·식품위생주사·간호주사·시설 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004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간호주사 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13
행정서기·공업서기·식품위생서기·간호서기·시설 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642
전산서기	5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 는 방송통신서기보	823
전산서기보	4
우정주사(우정3급)	59
우정주사(우정4급)	88
우정주사(우정5급)	809
우정주사(우정6급)	2,271
우정주사보	4,150
우정서기	6,416
우정서기보	9,916
기록연구사	10
전문경력관 가군(보험계리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우표 · 사진디자인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금융리스크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우표 · 사진디자인 담당)	3
전문경력관 나군(우표디자인 담당)	2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33,097
일반직 계	33,09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우정사업본부장)	1
고위공무원단	1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5
서기관	10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66
행정주사·공업주사·식품위생주사·간호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274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간호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13
행정서기·공업서기·식품위생서기·간호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272
전산서기	5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 는 방송통신서기보	823
전산서기보	4
우정주사(우정3급)	59
우정주사(우정4급)	88
우정주사(우정5급)	881
우정주사(우정6급)	2,475
우정주사보	4,523
우정서기	6,993
우정서기보	8,620
기록연구사	10
전문경력관 가군(보험계리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우표 · 사진디자인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금융리스크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우표 · 사진디자인 담당)	3
전문경력관 나군(우표디자인 담당)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영기획실장) ① (생 략)	제3조(경영기획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영기획실장 밑에 경영총괄 담당관 · 재정기획담당관 · 기반 시설기획담당관 · 홍보협력담당 관 및 노사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관</u> <u>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 ----- -----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u> <u>서기관 또는 서기관</u>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디지털혁신담당관) 디지털 혁신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u> <u>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 다.	제4조(디지털혁신담당관) ----- ----- <u>부이사관 · 과학기</u> <u>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u> <u>기관</u> 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담당관)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u> 또 <u>는 서기관</u> -----.
제5조의2(준법감시담당관) 준법감 시담당관은 <u>서기관 또는 기술서</u> <u>기관</u> 으로 보한다.	제5조의2(준법감시담당관) ----- ----- <u>과학기술서기관</u> 또 <u>는 서기관</u>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u> <u>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u> <u>또는 서기관</u> -----.
제7조(우편사업단) ① (생 략)	제7조(우편사업단) ① (현행과 같 음)

② 우편사업단에 우편정책과 · 물류기획과 · 우편집배과 · 우편사업과 · 소포전자상거래과 및 국제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삭 제

④ ~ ⑩ (생 략)

제8조(예금사업단) ① (생 략)

② 예금사업단에 금융총괄과 · 예금위험관리과 · 예금사업과 · 예금증권운용과 및 예금대체투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 략)

제9조(보험사업단) ① (생 략)

② 보험사업단에 보험기획과 · 보험위험관리과 · 보험개발심사과 · 보험사업과 · 보험증권운용과 및 보험대체투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 략)

②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예금사업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사업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우정인재개발원) ① (생략)

② 우정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교육운영과 및 교육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11조(우정사업정보센터) ① (생략)

②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 정보기반과·우편정보과·예금정보과·보험정보과 및 차세대금융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제12조(우정사업조달센터) ①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조달총괄과·계약과·물품관리과·건축설계과·대형건축설비과·일반건축설비과 및 물류자동화과

제10조(우정인재개발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우정사업정보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우정사업조달센터) ①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

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제14조(지방우정청) ① 서울·경인·부산·충청·전남·경북·전북·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제주지방우정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에 우정사업국·금융사업국 및 사업지원국을 두고, 그 밖의 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에 우정사업국 및 사업지원국을 두되, 각 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우정사업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우정청) ①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②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제15조(우정사업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u>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으로 보한다. ③ (생략) 제15조의2(금융사업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각 과장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으로 보한다. ③ (생략) 제16조(사업지원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각 과장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으로 보한다. ③ (생략) 제17조(감사관) ① 지방우정청장 (제주지방우정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감사관 1명을 두되, 감사관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으로 보한다. ② (생략) 제18조(제주지방우정청에 두는	<u>·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금융사업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u>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지원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u>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감사관) ① ----- ----- ----- --- <u>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제주지방우정청에 두는
--	--

과) ① (생 략)

② 각 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감사실장은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제19조(우체국장) 우체국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로 보한다.

제20조(우편집중국장) 우편집중국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물류센터장) 물류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감사실장은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우체국장)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행정주사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제20조(우편집중국장) -----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제21조(물류센터장)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제23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 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소속기관별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③ (생략)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30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우정인재개발원장 및 강원지방우정청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 보험위험관리과장, 우정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과장, 서울 강동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

제23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 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10퍼센트--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장, 인천 남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경기 이천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부산 사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부산 연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대전 대덕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광주·전남지역(서남권 제외)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편집중국의 국장, 대구·경북지역(서부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편집중국의 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